

배당표등본교부신청

사 건 2000타기000호 배당절차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

제3채무자 ◈◈광역시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○○○는 그 배당표 1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※배당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필요함(함께 전부명령, 양도명령 등의 경우에는 불필요함). 다만, 부동산집행절차에서의 제공 절차는 압류・현금화절차와 함께 집행절차의 한 단계로서 집행절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(민사집행법 제145조, 제169조) 별개의 절차로 취급되지 않지만, 동산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는 압류・현금화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실시됨(따라서 압류・현금화절차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